

강의평가 운영 지침

전부개정 2023. 2.
개정 2023. 5.
개정 2024. 2.
개정 2026. 1.

제1조(평가 목적) 이 지침은 학부 개설과목 강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평가 대상)**
- ① 학부에서 개설한 정규 학위 과정 강좌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② 4인 이내의 합동강좌는 개별 교원으로 평가하고, 5인 이상의 합동강좌는 대표 교수만 강의평가 점수를 매긴다.
 - ③ 다만, 파견 교환학생 대상의 교류대학 개설강의, ROTC 교과목, 사회봉사활동, 창업현장실습, 취업 관련 일부 교과목, Team Sports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전임교원이 본교가 추진하는 혁신 수업모델¹⁾을 적용한 교과목 개설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평가 방법)**
- ① 강의평가는 중간 강의평가(학기 중)와 기말 강의평가(학기 말)로 구분하여 매 학기 2회 시행한다.
 - ② 강의평가는 매 학기 수강하는 강좌에 대하여 강의평가 기간에 수강 학생이 직접 강좌당 각 1회 시행한다.
 - ③ 강의평가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다.
 - ④ 평가영역 중 학생자기평가(9번), 수업난이도(10번), 주관식(11번) 문항은 평가점수 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평가 시기)**
- ① 중간 강의평가는 학기 중(4월, 10월)에 2주간 내외로 시행하며, 기말 강의평가는 학기 말(6월, 12월)에 3주간 내외로 시행한다.
 - ② 다만 교무처장은 학사일정 상 필요한 경우, 강의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평가 문항 및 유형)**
- ① 강의평가 문항의 기본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 ② 강의평가 문항은 공통문항과 수업유형별 추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유형별 추가문항은 원격수업과 실험·실습(현장실습 포함)으로 구분되며 각 2문항이 있다.

1) 하이브리드 수업 교과목(혼합형학습, 플립러닝, 적응형학습), LEAD-PDS(e+문제기반학습, e+프로젝트기반학습, 지역사회 문제해결 PBL 교과목), AI 결합 교과목 등

제6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강의평가 결과는 전임교원의 교수업적 평가, 비전임 교원 및 강사의 재임용, Best Teacher Award 선정, 강의개선 교수력 강화 프로그램 대상자 확인, 강의평가 결과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간 강의평가 결과는 학기별 강의평가 최종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강좌 담당 교원은 중간 강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강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기말 강의평가 결과, 3.5 미만에 해당하는 강좌의 담당 교원은 교무처가 시행하는 강의 개선 교수력 강화 프로그램(교육 이수 및 강의 개선 보고서 제출)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 프로그램을 미이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과장, 단과대학, 교무처장의 순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동일 과목의 강의평가 점수가 2회 연속 3.5 미만에 해당하는 교원은 교무처가 시행하는 수업 컨설팅과 강의개선 교수력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미이수할 경우, 향후 해당 과목의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제7조(평가 결과의 공개) ① 강의평가 결과는 학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학생, 담당교수, 강의평가제도 담당부서에 공개한다. 기타 강의평가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교수 개인의 강의평가 결과 확인 및 학생 수강 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교무처가 지정한 기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강의평가 내용 중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내용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①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강의평가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9조(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의평가 문항

구분		문항	비고
공통문항		1. 교수는 수업계획서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였으며, 변경이 있을 시 사전에 공지하였다.	
		2. 수업계획서는 수업에 대한 정보(수업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3. 수업 내용은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하였다.	
		4. 강의 자료(교재, 참고자료, 동영상 등)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5. 수업 방법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6. 교수는 상호작용(피드백, 질의응답, 면담, 이메일, 쪽지 등)을 통해 학습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7. 출결, 과제, 시험 등은 타당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8. 나는 이 수업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1점, 2점: 이유 작성 必
		9. 나는 이 수업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점수 미반영
		10. 이 수업의 난이도는 나의 학습 수준보다 높았다.	점수 미반영
		11. 수업의 좋았던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서술형, 점수 미반영
수업 유형별 추가 문항	원격 수업 ²⁾	1. 교수는 강의 일정에 맞춰 사전에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2. 교수는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 온라인 학습 활동(과제, 토론, 퀴즈, 팀프로젝트 등)을 제시하였다.	
	실험 실습 (현장 실습 포함)	1. 실험·실습(현장실습 포함)의 과정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2. 실험·실습(현장실습 포함)은 이론 이해와 기술 습득,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2) 이러닝, 화상강의, 혼합형학습, 플립러닝, 적응형학습, e+문제기반학습, e+프로젝트기반학습, H-Metaversity